심 사 보 고 서

【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번호
42

2026. 10. 30.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: 2026. 10. 21. / 정미정 의원 등 10명

나. 회부일자: 2026. 10. 2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6. 10. 30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을 위하여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·관리 근거를 마련하고, 정기점검 및 민간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명 변경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·관리 근거 마련(안 제명,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
○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 등 보호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7조)

○ 민간 지킴이단 구성·운영 근거 마련 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공선)

○ 본 개정안은 평화의 소녀상을 조례상 보호·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, 시장의 관리책임과 정기점검, 민간 참여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임

○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, 교육·홍보 및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관련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도 두고 있어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

○ 특히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장의 보호·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, 정기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소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

○ 또한 민간 지킴이단의 구성·운영 및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은 평화의 소녀상 관리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, 이에 따른 예상 비용도 소규모로 추계되어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

○ 다만, 향후 평화의 소녀상이 추가 설치되거나 민간 지킴이단의 활동 범위가 확대될 경우에는 설치 개소 및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 방식과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·답변요지: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: 없 음

6. 심사결과: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: 없 음

심 사 보 고 서

【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】

의안번호
43

2026. 10. 30.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: 2026. 10. 21. / 임영신 의원 등 6명

나. 회부일자: 2026. 10. 2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6. 10. 30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세입·세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세입·세출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목적 및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
○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○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○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○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○ 특별회계 운용의 준용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공선)

○ 본 안건은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회계의 구분)에 따라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기타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·답변요지: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: 없 음

6. 심사결과: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: 없 음

심 사 보 고 서

【2027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】

의안번호
58

2026. 10. 30.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: 2026. 10. 21. / 남양주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6. 10. 2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6. 10. 30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2027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금의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출연대상 : 남양주시복지재단

○ 출연기간 : 2027.1.1.~2027.12.31.

○ 출연금액 : 금952,652,000원(금구억오천이백육십오만이천원)

○ 출연내용 : 남양주시복지재단 인건비, 운영비 및 사업비 교부

[출 연 내 역]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6년	2027년	증 감	비 고
계	933,626	952,652	19,026	2026년 대비 2.04% 증액
인 건 비	748,847	807,487	58,640	직원 보수 인상률(3.9%) 반영
운 영 비	142,779	108,565	△34,214	운영비 최소 소요액 반영
사 업 비	42,000	35,100	△6,900	사업 예산 일부 감액 반영
기타예산	0	1,500	1,500	항목변경(공공운영비→기타협의체등부담금)

○ 주요 증감 사유

- 인건비 : 직원 보수 인상율 3.9% 반영 ※ 공무원 보수 인상률 기준
- 운영비 : 일반수용비 감액 편성 등 운영비 최소 소요액 반영

3. 참고자료

○ 명 칭 : 남양주시복지재단

○ 설 립 일 : 2020. 12. 2.

○ 소 재 지 :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7 (다산동, 다산행정복지센터 내)

○ 조직구성

- (재 단) 1실 2부 / 11명 (대표이사1, 복지실장1, 직원9)
- (임 원) 총 12명 [이사 10명(대표이사1, 당연직1 포함), 감사2명]

○ 주요사업

- (조사・연구) 남양주시 복지 수요조사・연구를 통한 맞춤형 복지시책 개발
- (모금・배분) 공동모금회 연합모금 활성화 및 나눔사업 기획 추진
- (민・관협력) 민간 복지시설 맞춤형 컨설팅 및 복지정책포럼 개최 등

○ 출연금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2026년	2027년	비교증감	비 고
계		933,626	**952,652**	19,026	**2.04% 증액**
① 인건비		748,847	**807,487**	58,640	
급여		427,272	**456,101**	28,829	
제수당	정액급식비	18,480	**21,120**	2,640	
	가족수당	6,600	**5,040**	△1,560	
	시간외근무수당	53,086	**59,270**	6,184	
	정근수당가산금	4,600	**4,560**	△40	
	정근수당	11,506	**14,349**	2,843	
	명절휴가비	30,036	**32,423**	2,387	
	연가보상비	4,907	**5,381**	474	

퇴직적립금		48,616	**52,096**	3,480	
직무수행경비 (직급보조비)		26,940	**26,940**	-	
연금부담금 등		66,402	**73,759**	7,357	
평가급(성과금)		50,402	**56,448**	6,046	
② 운영비		142,779	**108,565**	△34,214	
일반 운영비	사무관리비	94,712	**59,617**	△35,095	
	공공운영비	13,499	**13,356**	△143	
	교육훈련비	500	**800**	300	
	회의비	1,500	**1,500**	-	
	시간 외 급식비	5,832	**5,832**	-	
여 비		5,280	**5,280**	-	
업무추진비		12,000	**12,000**	-	
수선유지비		500	**1,500**	1,000	
관서 업무비	정원가산 업무비	880	**880**	-	
	부서운영 업무비	2,100	**2,100**	-	
위탁관리비		5,976	**5,700**	△276	
③ 사업비		**42,000**	35,100	**△6,900**	
나눔홍보사업		24,000	20,000	△4,000	
사랑의 온도탑		10,000	10,000	-	
복지시설 컨설팅		4,000	2,100	△1,900	
안심케어		4,000	3,000	△1,000	
④ 기타예산		**0**	1,500	1,500	
기타협의체등부담금		0	**1,500**	1,500	항목변경

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공선)

○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「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2027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금의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

○ 2027년도 출연금은 952,652천원으로 2026년도 933,626천원 대비 19,026천원(2.04%) 증가하였으며, 인건비는 직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58,640천원 증가한 반면, 운영비는 34,214천원, 사업비는 6,900천원 각각 감소하였고 기타예산 1,500천원이 신규 반영됨

○ 남양주시복지재단은 지역 복지수요에 대한 조사·연구, 모금·배분 및 민·관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출연기관으로서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

○ 다만, 전체 출연금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인건비가 증가한 반면 운영비와 사업비는 감소한 만큼, 사업비 감액이 재단의 주요 사업 수행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과 인건비·운영비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전년도 집행실적 및 사업성과와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

○ 아울러 출연 동의는 출연금의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인 만큼, 구체적인 출연 규모와 세부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은 향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, 그 밖에 관계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·답변요지: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: 없　음

6. 심사결과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: 없　음

심 사 보 고 서

【별내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】

의안번호
59

2026. 10. 30.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: 2026. 10. 21. / 남양주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6. 10. 2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6. 10. 30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, 2027년 개관 예정인 별내노인복지관의 운영사무 위탁에 대하여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 내용 : 별내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

○ 노인복지관의 시설 운영,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

○ 노인복지관의 시설물, 장비, 물품, 비품 등 운용 및 관리 일체

○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사무 운영 일체

나. 위탁시설 개요

○ 소재지 :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22-11

○ 규　모 : (대지면적) 2,435.8㎡, (연면적) 약7,170.9㎡

○ 층별현황

구 분		면적(㎡)	용도
지상	4층	924.03	대강당, 경로식당
	3층	940.51	동아리실, 사무실, 관장실
	2층	949.19	프로그램실
	1층	841.29	스마트건강라운지, 상담실, 물리치료실
지하	1층	1,763.45	문서고, 방재실, 지하주차장
	2층	1,752.44	기계실, 지하주차장

○ 위치도



다. 민간위탁 기간 : 2027. 4. ~ 2032. 3. (5년)

※ 시설 준공 및 개관 일정에 따라 위탁 개시일과 종료일은 조정될 수 있음

라. 수탁기관 선정방식

○ 선정방법 : 공개모집 후 심사표에 의한 선정위원회 심사

○ 수탁법인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: 위원장 포함 9명 이내

○ 주요내용

- 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심사계획(공개경쟁) 수립
- 우리 시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돌봄 및 여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실한 법인 선정

마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○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

- 소 요 액 : 금600,000원(금육십만원)
- 산출내역 : 100,000원 × 6명 = 600,000원
- 지급근거 :「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

○ 별내노인복지관 개관준비

- 소 요 액 : 금155,446,000원(금일억오천오백사십사만육천원)
- 산출내역 : 인건비 134,996천원, 운영비 6,500천원, 자산취득비 13,950천원
- 지급근거 : 노인복지법 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, 제47조(비용의 보조)

※ 필수인력(5명) 인건비 :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

바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 분	검 토 의 견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○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·관리, 노인복지 프로그램 구성, 이용자 관리 및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등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 ○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노인복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필요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발성이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운영 가능
경제적 효율성	○시설 직접 운영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원 및 조직 비대화를 방지하여 지속적인 고정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, 민간법인의 후원금 및 지역사회 인적·물적 자원을 적극 연계·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전문 사회복지법인 등이 축적한 수년간의 노인복지 운영 노하우와 검증된 전문 프로그램을 즉시 적용할 수 있으며, 다변화되는 노년층의 복지 욕구에 유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품질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

구 분	검 토 의 견
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준용, 서비스 만족도 조사, 시설 연간 이용 실적 등 성과 평가 도구가 이미 제도화되어 있어 관리 성과를 주기적이고 정량적으로 수월하게 측정 가능함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을 적용받으며, 매년 시의 정기 지도·점검,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 승인, 세입·세출 결산 및 독립된 외부 감사기관의 회계감사를 수행하므로 철저한 감시와 통제 가능함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○ 현재 다수의 경험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사단법인 등 우수한 수탁 후보 단체(공급 시장)가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어, 투명한 공개경쟁 입찰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음
종 합 의 견	○ 노인복지관은 관내 어르신에게 평생교육·여가 프로그램사업, 노인상담사업, 사회참여(노인자원봉사자)사업, 건강생활 및 돌봄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·반영하고, 사업관리 및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이 필요함 ○ 따라서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사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❍ 향후 추진계획

- 2026. 12. : 수탁법인 선정계획 수립
- 2027. 01. : 공개모집 공고 및 서류 접수
- 2027. 02. :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 통보
- 2027. 03. : 위・수탁 계약 체결 및 의회 보고

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공선)

❍ 검토 결과,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무는 시민의 권리・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고, 업무의 성격상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됨.

○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위・수탁법인 선정 계획에 따라 전문성 있는 위탁자의 선정으로 노인복지관이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・답변요지:

○ 회의록 참고

6. 토론요지: 없　음

7. 심사결과:『원안가결』

8. 소수의견 요지: 없　음

심 사 보 고 서

【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】

의안번호
60

2026. 10. 30.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: 2026. 10. 21. / 남양주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6. 10. 2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6. 10. 30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돌봄서비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사전동의를 받는 사항임

○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및 제19조(재위탁 · 재계약)에 따라 시의회 동의안 제출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 내용 :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

○ 기본돌봄, 숙제지도, 문화 · 예술 · 스포츠 등 프로그램, 등 · 하원 지원 등

나.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	구분	위 치	면적(㎡)	정원	現 수탁기관
다함께돌봄센터 7호점	**재위탁**	별내3로 247 (별사랑마을2-10단지)	197.29	32	별나라꿈길 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(대표 한동윤)

다. 민간위탁 기간

시설명	설치일	위탁기간	
		기존	재위탁 시
다함께돌봄센터 7호점	2022.03.01.	2022.03.01. ~ 2027.02.28.(5년)	2027.03.01. ~ 2032.02.29.(5년)

라.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심사표에 의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

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	→	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	→	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 심의	→	위·수탁 협약체결
2026. 11월 중		2026. 12월 중		2027. 1월 중		2027. 2월 중

마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- 위탁경비 : 약 155,762천원 (1개소/년)

산출근거		합계(천원)	비고
계		155,762	
인건비	·(기본급) 센터장 : 3,342천원 × 12개월 × 1인 ·(기본급) 돌봄교사(전일제) : 3,102천원 × 12개월 × 1인 ·(기본급) 돌봄교사(시간제) : 1,551천원 × 12개월 × 1인 ·(기본급) 돌봄인력(시간제) : 1,551천원 × 12개월 × 1인 ·(호봉제) 개인별 호봉 적용에 따른 기준인건비 초과분 ·(명절수당) 개인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 × 60% × 2회 ※ 월급여,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, 퇴직적립금 포함	약 127,452	기본인건비 + 추가인건비 (호봉적용) + 명절수당
운영비	·(1,530천원 × 12개월) + (400천원 × 2개월) ※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수용비, 수수료, 여비 등	19,160	냉난방비 포함
돌봄 프로그램비	·200천원 × 12개월	2,400	
급식비	·4,500원 × 25명(정원의 80%) × 60일(방학일수) ※ (지원기준) 중식 1식 단가 9,000원의 50% 보조	6,750	*방학일수(안) 겨울방학 : 40일 여름방학 : 20일

바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 분	검 토 의 견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○ 돌봄종사자 채용, 돌봄 프로그램 구성, 학부모 관리 및 돌봄센터 시설 관리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 ○ 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초등아동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돌봄전문가에게 위탁 운영 필요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발성이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 가능
경제적 효율성	○ 돌봄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콘텐츠 활용 및 관리인력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 제고 ○ 외부강사 및 외부자원 활용을 통해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사교육비 절감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오랜기간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원활한 돌봄프로그램 운영・관리 가능
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정기평가 대상 시설 ○ 성과지표의 객관화 및 정당화로 자체평가 용이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(지도·감독) 및 제34조의4(시설의 안전점검),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(지도·감독)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○ 민간 위탁을 통해 변화하는 돌봄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프로그램 기획 및 활동의 유연성을 높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
종 합 의 견	○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는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지원 ○ 전문 자격을 갖춘 돌봄 종사자를 채용하여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돌봄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가 가능 ○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고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지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

사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○ 성과평가

- 근거 :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21조(성과평가)
- 대상 :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7호점
- 아동권리보장원 평가 결과 점수 비공개로 11월 중 부서 자체평가 예정

○ 기대효과

-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공백 해소
- 지자체에서 직접 설치한 시설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 강화 및 아동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

○ 향후계획

- 2026. 11. :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
- 2026. 12. : 수탁법인 공개모집 및 서류 접수
- 2027. 1. :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
- 2027. 2. :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인수인계 및 위·수탁협약 체결

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공선)

○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된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의 운영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,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.

○ 검토 결과,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무는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고, 업무의 성격상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. 다만, 위탁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,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정절차가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・답변요지:

○ 회의록 참고

6. 토론요지: 없 음

7. 심사결과: 『원안가결』

8. 소수의견 요지: 없 음

심 사 보 고 서

【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(콘텐츠기업 특례보증)】

의안번호
61

2026. 10. 30.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: 2026. 10. 21. / 남양주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6. 10. 2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6. 10. 30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202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추진근거

○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○ 「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」제3조(시장의 책무)

○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(2019.1.22.)

나. 출연기관 : 경기신용보증재단

다. 출연금액 : 10,000천원 (사업종료 2027년 6월)

○ 특례보증규모 : 200,000천원

⇒ 산출근거 : [10,000천원(시 50%) + 10,000천원(도 50%)] × 10배* = 200,000천원
(10배* :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도와 시·군 출연액의 10배까지 보증)

라. 출연 현황 (단위: 천원)

구분	출연현황									비고
	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년	'26년	
특례보증규모 (출연금 총액의 10배)	**2,500,000**	1,000,000	-	-	-	500,000	-	500,000	500,000	先 출연 後 지원
출연금 총액	**250,000**	100,000	-	-	-	50,000	-	50,000	50,000	
市 출연	**125,000**	50,000	-	-	-	25,000	-	25,000	25,000	
道 출연	**125,000**	50,000	-	-	-	25,000	-	25,000	25,000	

- 지원실적 : 64건, 2,392,000천원 보증 ☞ 보증 한도의 95.7% 소진 (19년~26.8월말)
- 관내 콘텐츠산업 기업 지원현황

구 분	합계	출판	만화	애니메이션	영화	방송	음악	게임	광고	캐릭터	솔루션
지원기업	64	5	1	-	14	5	-	-	34	-	5

마.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주요내용

구 분	내 용 (협약)
기관별 역할	· 경기도 :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재단에 특별 출연(출연비율 50%) · 시·군 :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재단에 특별 출연(출연비율 50%) · 경기신용보증재단 : 특례보증 홍보, 특례보증 지원 · 경기콘텐츠진흥원 : 평가위원회 구성, 콘텐츠 기업 자문 정보 제공, 경쟁력 강화 지원
지원규모	- 도와 시군이 출연한 출연금의 10배
출연방식	- 先 출연(일시 지급) 後 기업 지원
지원한도	- 업체당 최대 5억원 (보증기간 5년)
지원절차	- 1억원 이하 : 상담→서류접수→보증심사→보증서 발급 - 1억원 이상 : 상담→서류접수→평가위원회→보증심사→보증서 발급
참여시군 (25개)	- 고양, 광명, 광주, 구리, 군포, 김포, **남양주**, 부천, 성남, 수원, 시흥, 안산, 안양, 양평, 여주, 연천, 용인, 의왕, 의정부, 이천, 파주, 평택, 포천, 하남, 화성
콘텐츠산업 분야	- 출판, 만화, 애니메이션, 영화, 방송, 음악, 게임, 광고, 캐릭터, 솔루션

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공선)

○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(콘텐츠기업)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2027년 6월 사업종료 예정이고 2027년도 출연금은 10,000천원이며, 특례보증 규모는 경기도와 우리시 출연액 합계의 10배인 200,000천원임.

○ 검토 결과, 본 출연을 통해 관내 콘텐츠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절차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・답변요지:

○ 회의록 참고

6. 토론요지: 없　음

7. 심사결과:『원안가결』

8. 소수의견 요지: 없　음

심 사 보 고 서

【2027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】

의안번호
62

2026. 10. 30.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: 2026. 10. 21. / 남양주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6. 10. 2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6. 10. 30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남양주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의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출연대상: 남양주문화재단

○ 출연기간 : 2027. 1. 1. ~ 2027. 12. 31.

○ 출연금액 : 금4,656,403,000원

○ 출연내용: 남양주문화재단 인건비, 운영비 및 사업비 등 교부

[출 연 내 역]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6년	2027년	증 감	비 고
계	4,271,462	**4,656,403**	384,941	
인건비	1,683,679	**1,808,724**	125,045	직원(기간제 포함)기본급, 각종 수당, 퇴직급여, 평가급(성과급) 등 보수
일반운영비	593,511	**649,835**	56,324	업무추진비, 여비, 수선유지비 등 기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운영 경비
목적사업비	1,984,856	**2,006,033**	21,177	각종 목적사업비
기타 예산	9,416	**191,811**	182,395	협의체 부담금, 목적예비비, 자본적지출

○ 주요 증감 사유

- 인건비 상승 : 125,045천원 증액

  · 2026년 대비 임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3.9%인상 반영

  · 평가급(95,986천원), 특정업무경비(3,840천원) 신설

○ 시설운영·관리 : 56,324천원 증액

  · 기존 노후화 시설 보수 및 시설운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예산 반영

  · 원활한 공연장, 전시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자산취득

○ 목적사업비 : 21,177천원 증액

  · 민간사업지원의 지원금액 선정 및 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심사비, 모니터링 등 필수 예산 반영

  · 국도비 지원사업 확보를 위한 필수 자부담 금액 증액 반영

○ 기타 : 182,395천원 증액

  · 원활한 공연장, 전시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자산취득 필요성

  · 안전사고 예방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

4. 참고사항

○ 설립 개요

- 재 단 명 : 남양주문화재단
- 설립허가 : 2025. 7. 25.
- 소 재 지 : 남양주시 석실로 724, 4층
- 조　　직 : (임직원) 3팀(경영기획팀, 공연전시팀, 생활문화팀) / 21명(대표 1, 팀장 3, 직원 17)

  (이사회) 총 11명[이사9명(대표이사1, 당연직3 포함), 감사2명]

- 주요사업

  · 문화의 집 등 문화예술시설의 수탁·운영관리

  · 지역문화 예술단체 및 예술인 활동 지원 및 찾아가는 공연 등

  · 관내 민간 생활문화공간 발굴 및 취약계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

○ 출연금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	2026년 예산액	2027년 요구액	증 감
인건비		1,683,679	1,808,724	125,045
인건비		**1,683,679**	**1,808,724**	**125,045**
일반운영비		593,511	649,835	56,324
문화재단 운영		**246,216**	**246,109**	△107
시설운영관리	다산아트홀운영	**230,238**	281,642	**51,404**
	북한강야외 공연장운영	**83,134**	**87,419**	**4,285**
	더나르떼운영	-	**10,240**	**10,240**
	문화의집운영	**33,923**	**24,425**	△9,498
목적사업비		1,984,856	2,006,033	21,177
공연전시사업		1,050,620	1,063,423	12,803
생활문화사업		765,236	744,730	△20,506
타문화재단 연계 공연전시		150,000	185,000	35,000
후원회조성 및 기부금 조성		19,000	1,500	△17,500
홍보TF운영		-	11,380	11,380
기 타		9,416	191,811	182,395
사업비용	협회비	8,216	13,000	4,784
	목적예비비(조직개편)	0	57,509	57,509
자본적지출	시설보수 및 자산취득	1,200	121,302	120,102
합 계		4,271,462	4,656,403	384,941

5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공선)

○ 본 출연안은 2027년도 남양주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의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본 출연안은 출연의 절차에 관한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, 남양주문화재단의 운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남양주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그 출연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.

6. **질의・답변요지**:

○ 회의록 참고

7. **토론요지**: 없　음

8. **심사결과**:**『원안가결』**

9. **소수의견 요지**: 없　음

심 사 보 고 서

【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번호
63

2026. 10. 30.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: 2026. 10. 21. / 남양주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6. 10. 2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6. 10. 30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상위법(청소년복지 지원법) 근거규정 정비(안 제1조)

○ 정의의 개념 정비(안 제2조)

○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, 재외동포 여성청소년까지 생리용품 보편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관내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보편적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하고자 지원대상 규정을 개정함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○ 부서협의

가. 협의기간 : 2026. 7. 28. ~ 8. 5. (10일간)

나. 협의결과

1) 비용추계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(붙임)

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규제심사 대상 여부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○ 입법예고

가. 예고기간 : 2026. 8. 20. ~ 9. 9. (20일간)

나.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다. 관계법령 : 「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」

○ 관련부서 : 미래교육과

5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공선)

○ 본 안건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보편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임.

○ 지원대상을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청소년에서 국내 체류지가 남양주시인 외국인등록 여성청소년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여성청소년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한 것으로, 지원대상 확대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자 발굴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, 신청·지급 절차와 지원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요지:

○ 회의록 참고

7. 토론요지: 없　음

8. 심사결과:『원안가결』

9. 소수의견 요지: 없　음

심 사 보 고 서

【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번호
64

2026. 11. 4.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: 2026. 10. 21. / 남양주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6. 10. 2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6. 11. 4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거리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, 흡연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금연거리 지정 근거 마련(안 제3조제1항제7호)

-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거리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

○ 흡연실 설치 근거 마련(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)

-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흡연실 설치 기준과 방법은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르도록 함

4. 참고사항

○ 부서협의 결과

1) 협의기간 : 2026. 7. 28. ~ 2026. 8. 6.

2) 협의결과

- 비용추계 :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규제심사 대상 여부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○ 입법예고

1) 예고기간 : 2026. 8. 20. ~ 2026. 9. 9.(20일간)

2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5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공선)

○ 본 개정안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하는 사항임.

○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금연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

○ 특히 안 제3조제1항제7호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,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의견수렴 및 고시 절차와 연계하여 유동인구, 간접흡연 피해 정도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정·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
○ 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은 시장 또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그 설치 기준과 방법은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,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을 구분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

○ 향후 금연거리 지정 시에는 금연구역의 범위와 안내표지 등을 시민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,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

○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6. **질의・답변요지**:

○ 회의록 참고

7. **토론요지**: 없　음

8. **심사결과**:**『원안가결』**

9. **소수의견 요지**: 없　음